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. 7. 6 선고 2020가단86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자빈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7. 6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7. 7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경북 문경시 D 임야 440㎡에 관하여 2018. 4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25,000,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들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. 4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50,000,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- 가. 주문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)에 관하여 2011. 3. 14. 피고 B 명의로, 2018. 4. 13.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- 나. 피고 B는 2018. 4. 11. 아들인 피고 C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)을 체결하였다.
- 다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,000,000원으로 된 E조합 명의로 2016. 9. 26.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. 11. 5. 말소되었다.
- 라. 이 사건 토지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5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4, 5, 6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,000,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

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2013. 10. 원고에게 25,000,000원을 변제하여 잔액이 25,000,000원이라며 다툰다.

3. 판단

가. 피고 B

갑3, 을1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50,000,000원으로 된 2010. 12. 11.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, 피고 B는 2013. 10. 원고에게 25,000,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. 원고는 2013. 10.경 별도의 대여금 채권 25,000,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잔액은 25,000,000원이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. 7. 7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C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)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 25,000,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남인수